##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196

발의연월일: 2024. 8. 26.

발 의 자:정준호·임호선·김태선

서영교 · 이춘석 · 민홍철

이기헌 • 진선미 • 이연희

이학영 · 서삼석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자살통계를 수집·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자료를 통해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여 그 장소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나 방어펜스, 안내문 등을 설치하는 등 자살빈발장소에 대한 관리를 자살예방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·장소 등을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예방장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

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신설).

##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2(자살예방장소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결과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시설·장소 등을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살예방장소에 제13 조제4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등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 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예방장소의 지정, 시설물의 설치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18조의2(자살예방장소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결과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·장소 등을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있다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살예방장소에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살예방장소에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살예방장 기위한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예방장소의 지정, 시설물의 설치 및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